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拒 查 定

〈大法院 第5部 判決〉(1980. 6. 24)

裁判長：大法院判事 김 용 철

關與法官： 임 항 준 · 김 기 흥

1. 審判請求人(上告人)：다이아몬드 삼탁크 Corp.

代表 S.T. 코박크스(美國 오하이오州 클리블랜드市)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特許廳長

3. 原 審 決：特許廳 1979. 4. 30字 1978年 抗告審判(결) 第196號 審決

4. 主 文：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

5. 理 由

上告人의 代理人等의 上告理由를 綜合하여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出願한 商標(이하 本願商標라함)가 우리나라 去來社會의 通念에서 本願商標의 圖形을 보면 3個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것이고 本願상표의 右側에 2段으로 表示된 文字中 그 下端에 표시된 Shamhock라는 英語單語를 보고 토끼풀이라고 생각할 우리나라의 需要者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本願상표를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인 Three Diamonds와 全體的으로 對比하여 보면 兩商標는 “세계의 다이아몬드”라는 점에서 觀念이 類似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商品出處의 誤認 混同을 일으킬 念慮가 있다는 趣旨로 判定하여 本願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拒絶査定한 措置가 正當하다는 취지로 判定된다.

本件에서 本願상표와 引用商標를

비교할때에 3個의 다이아몬드가 各構成의 一部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判념이 유사한바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外觀稱呼의 점에서 觀察하여 위 두 상표가 果然 전체적인 關係에서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商品去來에 있어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與否를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또 本願 상표의 右側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중 그 하단에 표시된 영문자가 原審設示와 같이 우리나라 수요자가 쉽게 그 意味를 認識하기 어려운 文字라고 하더라도 이 部分이 本願상표를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除外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3개의 다이아몬드라는 점에서 判념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本願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審理未盡, 理由不備 내지 상표의 유사 여부판단에 관한 法理誤解 등의 違法이 있고 이는 審決結果에 影響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論旨는 이유

있어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判決한다.

一 參 考

抗告審

1978년 항고심판(결) 제196호
항고심판 청구인：다이아몬드 삼탁크 Corp. 대표이사 S.T 코박크스(美國 오하이오州 클리블랜드市)

代理人：차순영

1976년 商標登錄出願제 6321호 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主文：본건 항고심판청구는 成立할 수 없다.

